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1회 임시회

검토 보고서

2023. 3. 31.(금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	장정희 의원 외 7명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
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”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장정희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23. 3. 22.
- 회부일 : 2023. 3. 24. (의안번호 : 23-24)

2. 제안이유

-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하여,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,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 증진의 책임)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'23. 3. 17 ~ '23. 3. 22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하여,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,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1조의 제목“(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 위원회)”를“(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심의·자문하기”로, “추진위원회”를 “조성위원회”로 하며,
 - 같은 조 제1호를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며,
 - 또한 안 제1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“노인분야 전문가”를 신설하고,
 - 안 제13조에 공무원인 위원 임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

-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%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었으며, 2018년에 14%를 넘는 고령사회, 그리고 2026년에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우리구도 2023년 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5,975명으로 전체 인구(365,447명) 중 약 15%를 차지하고 있음.
- 이에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·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, 우리 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할 확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</u>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<u>추진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<u>조성계획의 수립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12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1조(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<u>조성위원회</u>) ----- ----- <u>심의·자문하기</u> ----- ----- <u>조성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2항에 따른 <u>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12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라. 노인분야 전문가</u></p>

제13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제13조(위원의 임기) -----

----- . 다만, 공무원인 위원
의 임기는 그 직의 재
직기간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2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이윤미
연 락 처	02-3153-8857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 ①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

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
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
2010. 1. 18.>

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 삭제 <2008. 2. 29.>

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타구 위원회 명칭 현황

명칭	조성위원회	추진위원회
구	6개구	3개구